NEOWIZ

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네오위즈(이하 '당사')는 2026년 6월 12일 주식회사 콩닥스튜디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, 「상법」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합병계약 승인을 할 예정이므로 「상법」 제527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다　　음-

1. 합병 당사회사
   가. 존속법인: ㈜네오위즈
   나. 소멸법인: ㈜콩닥스튜디오
   (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)

2. 합병 방법: ㈜네오위즈가 ㈜콩닥스튜디오를 흡수합병함

3. 합병기일: 2026년 8월 20일

4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 가. 행사절차: 2026년 6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'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'를 제출함.
   나. 행사기간: 2026년 6월 26일 ~ 2026년 7월 10일
  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   1) 2026년 7월 10일까지 별첨의 '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'를 거래 증권사 또는 아래 주소로 제출
      2) 우편 송부처: [13487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, 주식회사 네오위즈 IR 주식담당자 앞(☏ 031-8023-6600)
   라. 주식매수청구권: 「상법」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   마. 「상법」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2026년 6월 26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
주식회사 네오위즈　공동대표이사 김 승 철, 배 태 근

별첨: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주식회사 네오위즈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네오위즈와 주식회사 콩닥스튜디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**주주명**	
소유주식의 종류		**소유주식수**	

2026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주민등록번호(앞 6자리 기재):
주소:
연락처: